

침입절도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민간경비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A Research Survey on the Characteristics of Burglaries: Focused on How to Utilize Private Security

김 대 권*

<목 차>

- | | |
|------------|---------------|
| I. 서론 | IV. 민간경비 활용방안 |
| II. 이론적 논의 | V. 결론 |
| III. 실증분석 | |

<요 약>

절도범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범죄유형 중 일반인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또한 재산범죄 중에서 사기와 함께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유형이며 특히 침입절도는 가장 피해율이 높은 범죄유형 중에 하나이다.

이 연구는 침입 절도 특성에 따른 민간경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로 침입절도의 공식통계상의 실태와 침입절도 수형자를 설문조사하여 그 행위적 특성들을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어기제를 제시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침입절도의 경우 경찰을 비롯한 공경비에서도 중요한 영역이지만 민간경비에서도 그 역할이 점차 커져가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를 중심으로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는 전국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10곳에 수용되어있는 침입절도범 208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침입절도범의 범죄 상황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침입절도범의 약 24%만이 합리적 선택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범행당시 체포의 두려움은 약 60.7%가 가지고 있었으나, 범행에 대한 자신감도 69.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침입절도의 시간은 밤 시간대에 주로 실행되었고, 휴가철인 여름철에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서 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범행대상 지역은 도시의 주거지역, 범행시 침입장소는 개인주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 연구원, 경찰학박사

범죄자의 범행대상 선택시 고려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수익성'이 가장 크게 고려되고 있었고, 다음으로 '감시성', '위험성' 등의 요인이 범죄자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는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종범죄의 경력은 초범인 경우가 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범행시 음주나 약물사용 여부는 커다란 동기요소로 작용하지 않고 있었다. 범행시의 공범여부는 응답자의 73.9%가 단독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제어 : 침입절도, 민간경비, 합리적 선택, 교정시설, 범행대상 선택

I. 서론

절도는 일반시민들에게 있어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범죄유형중 하나로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범죄이며 그 범죄수법이 점점 치밀하고 지능화되고 있어 범인검거를 힘들게 하는 범죄중 하나이다(이운호, 2008: 5). 특히 침입절도는 피해의 범위가 넓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 범죄의 두려움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침입절도는 높은 범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공식통계 자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법무부 분석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침입절도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08년의 경우 총 절도 223,262건 중 침입절도가 73,603건으로 전체 절도의 33%로 절도범죄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7년 34%(총 절도 212,530건 중 침입절도 72,911건), 2006년 35%(총 절도 190,740건 중 침입절도 65,254건), 2005년 37%(총 절도 191,111건 중 침입절도 69,689건), 2004년 35%(총 절도 154,843건 중 침입절도 53,421건)등 꾸준히 높은 범죄 발생율을 유지하고 있다(법무부, 2005-2009).

이 연구는 침입절도 가해자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공식통계자료를 통해 파악하고, 침입절도로 수감 중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좀 더 구체적인 범죄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특히 침입절도의 경우 경찰을 비롯한 공경비 영역에서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민간경비에서도 그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의 영역을 중심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논의

1. 침입절도의 의미

절도는 전형적인 범죄유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서 재물만 대상으로 하는 순수한 재산죄 이다(이순래 외, 2008: 309). 우리나라의 형법상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장경학, 2004: 390). 단순절도죄(제330조), 특수절도죄(제331조) 및 상습절도죄(제332조)를 두고 있고, 자동차 등의 불법사용(제331조 2항)도 절도죄에 해당된다. 그 밖에 미수범처벌규정(제342조)과 친족 간 범

행에 관한 특례규정(제344조)이 있다(배종대, 1999: 316).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에서 집계하는 공식범죄통계 자료집인 종합범죄보고서(Uniform Crime Report)에 따르면, “절도(Larceny-theft)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 또는 준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취득, 운반, 도주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1984: 24).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러한 절도행위를 다시 여러 가지 하위 범주로 구분하는데, 소매치기, 들치기, 상점절도, 자동차로부터의 절도, 자동차부품절도, 자전거절도, 건물에서의 절도, 자동판매기절도, 기타 절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노성호, 1996).

침입절도의 경우 다른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적인 주거공간이나 영업장소를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가 물건을 훔치는 행위와 함께 일어난다는 점에서 단순한 절도행위보다 더욱 가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이다.

미국의 형사사법통계사전에 의하면, 침입절도(Burglary)는 “중범죄 또는 사소한 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가지고 힘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일상적인 주거지나 사업 또는 영업을 위해 사용되는 어떠한 고정된 구조물, 차량, 또는 선박에 대하여 비합법적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말한다(U. S. Department of Justice).

이러한 침입절도가 일반절도와 달리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범행수법이 다른 사람의 사적인 영역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또한,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더욱 심각한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침입절도를 예방하는데 각별히 주의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거침입절도범이 처음에는 물건을 훔치려는 의도에서 침입을 하였지만, 집주인과 마주치는 상황에 직면하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범죄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부녀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성폭력행위를 저지르는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Conklin, 2001: 69).

2. 선행연구 분석

박강철(1995) 연구에서는 주민에 의한 이용도가 낮고, 건물 배치 등에 의해 자연감시성이 낮으며, 특히 야간에 가로등 설치가 미비하고 관리상태가 부실한 곳에서 주로 범죄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성식(1996)의 연구에서는 감독 상황 여부가 범죄를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웅렬(1997)의 연구에서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높고, 침입절도범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감시성과 접근성을 제시하였다. 황지태(2003)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고, 초범, 음주 상태, 범행 용이성을 우선시 하는 강·절도

범은 주로 친숙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력범은 친숙한 장소를 오히려 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또한 이주락(2006)의 심층 면접조사에 의하면 충동적으로 절도를 하는 아마추어 절도범보다 사전에 계획을 가지고 침입절도를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외국의 침입절도 범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Cromwell (1989)연구의 경우 침입절도범은 집이 완전히 비는 시간대를 노렸다가 범행을 저지른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Cromwell et al., 1989).

Thomason & Fisher(1996)는 주거침입절도와 줌도둑을 일상활동이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범죄자에게 가구가 노출되어 있다고 인지하는 가구는 야간침입절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engert와 Wasilchick(1985)의 연구에서 주거침입절도범들은 체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대부분의 면접 절도범들은 체포되는 것은 절도범이 운이 아주 나쁠 때나 경찰이 운이 매우 좋은 경우라고 언급하고 있다.

3. 침입절도의 실태

1) 재산범죄 죄명별 발생현황

지난 10년간 재산범죄의 대체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절도장물외의 경우 2005년은 2004년에 비하여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절도는 2000년 165,261건으로 1999년 82,584건에 비하여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구제금융사태(IMF)로 인한 서민생활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03년 까지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04년에 다소 줄었으나 2005년부터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2007년에는 200,000건을 돌파한 212,530건이 발생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재산범죄 죄명별 발생현황 (1998-2007)

	합 계	절 도	장 물	사 기	횡 령	배 임	손 괴
1998	338,943	87,860	1,744	210,436	28,022	5,468	5,413
1999	319,627	82,584	1,889	195,197	26,371	6,781	6,805
2000	368,404	165,261	1,535	161,986	21,883	4,850	12,889
2001	392,473	169,121	1,319	180,350	22,867	4,842	13,974
2002	415,572	179,208	1,418	195,914	21,990	4,767	12,275
2003	470,826	187,871	1,145	240,359	23,895	5,322	12,234
2004	447,163	154,850	1,581	246,204	27,224	6,736	10,568

2005	442,015	191,114	3,547	203,697	25,412	5,901	12,344
2006	455,948	190,745	2,432	203,346	25,084	5,402	28,939
2007	469,654	212,530	3,050	186,115	24,122	5,256	38,581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8: 55.

2) 절도범죄의 월별 발생추세

절도의 월별 발생추세를 살펴보면 2007년의 경우 212,459건이 발생하여 전년 192,670건에 비해 10.3% 증가하였고, 월별 증감추세는 11월과 12월만 각각 11.1%, 7.2%로 감소하고, 6월 26.5%, 2월 23.5%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의 월별 발생추세는 <표 2>와 같다.

<표 2> 절도범죄의 월별 발생추세

(단위 : 건, %)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06년	192,670	13,577	13,004	14,083	15,486	18,839	16,713
07년	212,459	18,249	16,059	18,303	17,742	20,921	21,134
대비(%)	10.3	19.7	23.5	15.8	14.6	11.1	26.5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6년		13,828	14,979	16,022	17,780	19,977	18,382
07년		18,013	15,709	18,373	21,155	17,750	17,050
대비(%)		15.8	4.9	2.2	19.0	-11.1	-7.2

※ 자료: 경찰청, 「경찰백서」, 2008: 112.

3) 범행 수법별 유형

절도의 수단별 발생건수를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살펴보면, 1998년에 87,860건이던 것이 2000년을 기점으로 165,26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007년에는 212,530건으로 20만 건으로 넘어섰다. 이중 침입절도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절도 중 침입절도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타절도의 비중이 전체의 57%를 차지하는데 이는 침입절도나 치기절도의 어느 한 유형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 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절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절도 수법별 발생건수 (1998-2007)

	계	침입절도	치기절도	차량이용 절도	기 타
1998	87,860(100)	44,063(100)	4,310(100)	2,139(100)	37,348(100)
1999	82,584(94)	43,847(100)	4,559(106)	2,002(94)	32,176(86)
2000	165,261(188)	88,914(202)	7,982(185)	2,930(137)	65,435(175)
2001	169,121(192)	88,295(200)	9,331(216)	2,572(120)	69,013(185)
2002	179,208(204)	77,401(176)	9,742(226)	2,430(114)	89,635(240)
2003	187,871(214)	77,980(177)	10,014(232)	2,462(115)	97,415(261)
2004	154,850(176)	53,430(121)	14,555(338)	2,337(109)	84,528(226)
2005	191,114(218)	69,690(158)	17,925(416)	3(0.1)	103,496(277)
2006	190,745(217)	65,255(148)	18,590(431)	110(5.1)	106,790(286)
2007	212,530(242)	72,911(165)	18,062(419)	3(0.1)	121,554(354)

1. 범죄분석 2. () 안은 지수 3. 특가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8: 56.

4) 침입절도 발생현황 및 장소

침입절도를 비롯한 강·절도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율은 그 발생건수가 시대별로 다소간 증감을 겪어오면서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표 4>은 지난 2000~2008년 동안의 침입절도 발생장소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00년의 경우 전체 침입절도 88,914건 중 아파트나 연립다세대의 침입절도범죄가 19,062건으로 21.4%, 단독주택이 19,147건으로 21.5%를 차지하고 있다. 2001년은 전체 침입절도 88,293건 중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그리고 단독주택 등 주거침입절도의 비율이 2000년도와 마찬가지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약 43%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002년부터 전체 침입절도의 범죄건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으나 2004년을 기점으로 다시 조금씩 범죄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총 범죄 발생건수의 증감과는 별도로 꾸준히 주거침입절도의 비중은 약 40~50%선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주거침입절도 다음으로는 상점이나 사무실의 범죄발생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식통계의 결과를 기초 볼 때 침입절도 중 빈집, 아파트, 주택 등 주거침입절도의 범죄발생건수가 매년 일정 수준의 높은 구성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표 4> 2000~2008년도 침입 절도범죄의 발생장소 현황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88,914	88,293	77,401	77,979	53,421	69,689	65,254	72,909	73,602
아파트									
연립 다세대	19,062	20,865	16,987	18,141	8,058	13,350	12,771	14,471	13,968
단독주택	19,147	17,562	13,265	13,029	15,643	20,319	20,168	23,915	24,440
고속도로	51	44	34	28	23	16	6,947	13	9
노상	11,219	10,639	8,855	9,021	2,154	2,080	9,139	874	950
상점	11,043	10,856	11,950	11,322	7,582	8,913	230	9,284	9,076
시장노점	436	379	525	438	198	200	2,275	234	240
숙박업소									
목욕탕	3,257	3,803	3,073	3,182	2,238	2,662	4,031	2,639	2,284
유흥접객업소	1,287	1,338	1,285	1,111	2,860	3,962	5,259	4,755	5,394
사무실	7,324	7,387	6,437	7,037	4,890	6,106	1,287	5,354	4,984
공장	1,575	1,448	1,054	1,153	1,081	1,258	1,287	1,802	1,857
공사장									
광산	591	586	479	476	467	490	471	612	702
창고	809	707	511	587	173	202	201	303	374
역대합실	51	63	66	33	62	36	32	46	31
지하철	23	39	37	26	12	8	5	9	11
기타교통수단	736	818	541	482	165	123	163	33	276
홍행장	255	180	184	122	214	326	348	194	144
유원지	98	108	53	72	95	139	90	101	160
학교	483	688	741	588	285	451	320	309	323
금융기관	241	431	1,664	1,781	204	150	187	156	303
의료기관	612	677	579	590	282	255	260	244	238
종교기관	528	439	531	547	564	691	734	847	709
산야	171	171	110	163	181	182	196	214	258
해상	324	86	62	58	66	57	19	19	31
부대	9	9	25	7	5	2	2	6	4
구급장소	5	1	1	3	-	1	-	-	-
공지	305	240	148	161	20	30	11	14	23
기타	9,272	8,729	8,204	7,821	5,899	7,680	6,102	6,461	6,813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1-2009 (재구성)

5) 침입절도 발생시간 및 요일

<표 5>는 2008년 침입절도의 범죄발생시간을 시간대별로 살펴본 것이다. 일반적으로 낮 시간대와 밤 시간대에 범죄발생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낮 시간대는 주거지역의 경우 직장이나 학교 등으로 인하여 비어있는 경우가 많고 밤 시간대는 어두워진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침입절도가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범죄 발생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5> 범죄발생 시간

단위: 건수(발생)

2008	계	새벽	아침	낮	오전	오후	저녁	밤	미상
절 도	223,264	13,252	11,158	75,240	25,168	50,072	23,121	69,610	30,883
(%)	100	5.9	4.9	33.7	11.2	22.4	10.3	31.1	13.8

새벽: 04:00-06:00 오전: 09:00-11:59 오후: 12:00-17:59
 저녁: 18:00-19:59 아침: 07:00-08:59 낮: 09:00-17:59 밤: 20:00-03:59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범죄발생시간, 2009: 151 (재구성)

6) 요일별 범죄발생건수

2008년 절도의 범죄발생건수를 요일별로 살펴본 <표 6>에 따르면 총 절도건수는 223,264건으로 일요일에 28,545건, 월요일 31,672건, 화요일 32,843건, 수요일 31,553건, 목요일 32,323건, 금요일 33,284건, 토요일 32,798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범죄발생요일은 절도발생비율에 있어서 특이한 사항을 보이지 않으며,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골고루 퍼져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범죄발생 요일

단위: 건수(발생)

2008	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미상
절 도	223,264	28,545	31,672	32,843	31,553	32,323	33,284	32,798	246
(%)	100	12.7	14.1	14.7	14.1	14.4	14.9	14.6	0.1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범죄발생요일, 2009: 152. (재구성)

Ⅲ. 실증 분석

1. 연구방법 및 절차

전국의 구치소와 교도소의 교정시설에서 침입절도로 수용중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설문대상 교정시설은 서울구치소, 성동구치소, 영등포구치소, 수원구치소, 인천구치소 등 5곳의 구치소와 영등포교도소, 안양교도소, 의정부교도소, 대전교도소, 공주교도소 등 5곳의 교도소이다.

조사 대상자는 가해자 집단으로 한정하여 연구가 진행되었고, 1차적으로 제시된 문헌연구

를 중심으로 이를 검증을 위하여 실증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설문은 유효설문지 208부를 사용하였다.

2. 연구결과의 논의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전체 조사대상자의 성별분포를 보면 남자가 200명으로 96.2%를 차지하고, 여자가 8명으로 3.8%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분포는 남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침입절도의 특성상 여성범죄자의 비율이 낮고, 수용되어있는 비율도 낮기 때문에 남자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이다.

범죄발생당시 연령은 20~25세 이하가 40명으로 19.3%, 26~30세 이하가 46명으로 22.2%, 31~40세 이하가 67명으로 32.4%, 41세 이상이 54명으로 26.1%로 나타났다. 범죄발생당시의 연령이 20대가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다른 일반적인 범죄의 특징과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연구대상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초등학교 중퇴 포함)가 23명으로 11.1%, 중졸 이하(중학교 중퇴, 퇴학 포함)가 44명으로 21.2%, 고졸 이하(고등학교 중퇴, 퇴학 포함) 99명으로, 47.6%, 대졸 이상(대학교 재학, 중퇴 포함)이 42명으로 20.2%를 차지하고 있었다. 범죄자 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가 제일 높고, 중졸 이하, 대졸 이상,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미혼, 별거, 이혼을 포함하여 혼자 생활하는 비율이 159명으로 76.4%로 매우 높았고, 기혼 및 동거 등의 비율은 49명으로 2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이전의 소득은 100만원 이하가 72명으로 35.6%, 101~200만원 이하가 68명으로 33.7%, 201~300만원 이하가 32명으로 15.8%, 300만원 이상도 30명으로 14.9%를 차지하고 있었다.

2) 침입 절도시 합리적 선택 여부

침입 절도범들의 합리적 선택은 침입절도를 설명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에게 합리적 선택이 이루어졌는가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침입절도범들은 합리적 선택을 통해 범죄지역을 선택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 응답자 200명중 48명(약 24%)의 응답자만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152명(약 76%)의 응답자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최응렬(1997)의 연구에서 나타난 우발적인

상황에서의 범죄와 일치하는 연구결과이다. 이는 합리적 선택이론에 대하여 부정하는 연구 결과이지만 연구대상자의 설문에 대한 거부감이나, 미결수 혹은 기결수라 하더라도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우발적인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기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유추할 수도 있으므로, 이는 후속연구에서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범행선택의 위험

<표 7>은 범행선택의 위험에 관한 설문에 대한 응답으로 범행당시 체포의 두려움과, 범행의 자신감 정도를 측정하였다. 범행당시 체포될 것에 대한 두려움의 설문결과를 ‘조금 두려웠다’는 응답이 40명(약 3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 두려웠다’라는 응답은 55명(26.7%)으로 나타나 ‘별로 안 두려웠다’ 19명(9.2%), ‘전혀 안 두려웠다’(7.8%)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함으로써 침입절도범의 경우 절도 시 범죄 실행에 대한 두려움 혹은 체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포는 아예 상상도 안했다’는 응답도 46명(22.3%)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침입절도범에 대한 범행성공의 자신감을 묻는 설문에서 자신감이 있었다는 응답자가 144명(약 69.9%)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범행에 대하여 자신감이 없었다는 응답은 62명(30.1%)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침입절도 범죄자의 경우 우발적이기 보다는 범죄대상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준비하기 때문에 범행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표 7> 범행 선택의 위험

		빈도	백분율(%)
체포의 두려움	체포는 아예 상상도 안했다	46	22.3
	전혀 안 두려웠다	16	7.8
	별로 안 두려웠다	19	9.2
	조금 두려웠다	70	34.0
	매우 두려웠다	55	26.7
합 계		206	100.0
		빈도	백분율(%)
범행의 자신감	전혀 없다	62	30.1
	있었다	144	69.9
합 계		206	100.0

4) 침입절도의 시간적·계절적 요인

침입절도범의 시간적·계절적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그에 따른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8>를 살펴보면, 침입절도의 시간적 요인을 파악하기위하여 새벽(04:00-06:00), 아침(07:00-08:59), 아침 후 오전(09:00-11:59), 오후(12:00-17:59), 저녁(18:00-19:59), 밤(20:00-03:59) 이렇게 세분화 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34.2%(68명)는 밤 시간대에 절도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1.6%(43명)는 오후시간대에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범죄율을 일몰전(아침, 아침 후 오전, 오후)과 일몰 후(저녁, 밤, 새벽)로 구분하여 정리해보면 일몰전이 약 37.7%(75명), 일몰 후가 약 62.3%(124명)으로 일몰 후에 침입절도범죄가 발생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침입절도범의 계절적 요인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에서 여름철의 침입절도 발생이 약 42.9%(84명)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가을이 약 25.5%(50명), 봄 16.3%(32명), 겨울 15.3%(30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범죄자에게 있어 침입절도의 시간과 계절적 요인은 매우 중요한 요소 이다. 시간적 요인의 경우, 침입절도범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였다면 해가 떨어진 어두운 시간에 침입절도를 하는 것이 침입이나 도주에 용이하다고 판단하게 될 것이고, 낮에 침입절도를 하게 된다면 빈집 등의 절도에 용이하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계절적 요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름철에 침입절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여름철에 날씨가 무더운 관계로 창문이나 출입구를 열어놓는등가 여름 휴가철에 빈집이 늘어날수록 침입절도의 위험은 더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일 것이다.

<표 8> 침입절도의 시간적·계절적 요인

		빈도	백분율(%)
범죄 발생시간	새벽	30	15.1
	아침	10	5.0
	아침 후 오전	22	11.1
	오후	43	21.6
	저녁	26	13.1
	밤	68	34.2
합 계		199	100.0
		빈도	백분율(%)
범죄 발생계절	봄	32	16.3
	여름	84	42.9
	가을	50	25.5
	겨울	30	15.3
	합 계	196	100.0

5) 범행대상 지역과 장소의 특징

침입절도의 범피자들이 범행대상 선택 시 소득수준 등 범행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으로 지역과 장소를 빼놓을 수 없다. <표 9>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침입 장소의 특징을 조사한 결과이다. 먼저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면, 도시의 단독·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지역이 39.5%(7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도시 외곽의 상업·공단지역이 30%(60명), 도시 상업·유흥지역이 13%(26명), 농어촌 지역과 기타 지역 등으로 나타났다. 침입 장소의 특징에서는 개인 주거의 비율이 61.9%(12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유흥 및 위락업소 13.4%(27명), 개인상점 7.4%(15명), 중·대형 사업체 6.9%(14명), 기타장소 6.9%(14명), 공공기관 3.5%(7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도시외의 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이 범행대상지역으로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침입 절도 시 발생하는 이익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고, 침입 장소의 경우 개인주거의 비율이 높은 것은 상점이나 유흥 위락업소보다 금전적인 매력성은 떨어질 수 있으나 범행이 용이하고, 쉽게 검거되지 않는 장점이 있어 범피자들이 범행대상 선택 시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보여 진다.

<표 9> 침입절도의 장소 및 지역적 특성

		빈도	백분율(%)
지역적 특성	농어촌 지역	12	6.0
	도시 주택지역	79	39.5
	도시의 상업·유흥지역	26	13.0
	도시 외곽 상업·공단지역	60	30.0
	기타	23	11.5
합 계		200	100.0
침입장소		빈도	백분율(%)
침입장소	개인주거	125	61.9
	개인상점	15	7.4
	유흥 및 위락업소	27	13.4
	중,대형 사업체	14	6.9
	공공기관	7	3.5
	기타장소	14	6.9
합 계		202	100.0

6) 범행선택 인지과정에 따른 기술적 특징

침입절도범이 범행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크게 9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이에 대한 기술적 분석결과는 <표 10>와 같다.

침입 절도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들을 평균값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침입절도범은 절도한 물건의 수익성(2.61), 처분용이성(2.54) 등의 매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어떤 요인 보다도 절도한 물건이 높은 값어치를 가지고 있을 때 범행대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절도한 물건을 쉽게 처분할 수 있을 때 범죄의 표적으로 고려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범행에 있어서 범행대상의 금전적인 매력성은 범행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침입 절도 시 검거될 위험성(2.55), 적발가능성(2.42)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는데 특히, 범행에 있어서 CCTV설치여부나 범행전후 주변의 순찰여부가 범행대상 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는 범행의 성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위험한 지역에서의 침입절도는 범죄자들이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물리적 환경요인이 침입절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근접성(2.19), 숙지성(2.23), 관련성(2.01), 안정성(2.41), 침입·도주의 용이성(2.30) 등의 요인들은 범죄자의 범행대상 선택 시 비교적 고려하는 정도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주요변수	사례수(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근접성	196	1	4	2.1973	.81347
숙지성	197	1	4	2.2352	.84278
관련성	198	1	4	2.0185	.78852
안전성	183	1	4	2.4153	.93889
침입·도주 용이성	197	1	4	2.3012	.78722
처분용이성	198	1	4	2.5455	.89013
수익성	199	1	4	2.6181	.88898
적발가능성	200	1	4	2.420	.8416
위험성	196	1	4	2.5510	.94459

7) 침입절도범의 범죄 관련 특성

① 동종범죄경력

범죄 관련 특성은 범죄자 동기요소 혹은 동기화된 범죄자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동종범죄경력은 침입절도 범죄의 특성상 계획을 세우고 합리적 선택의 결과 이루어진다는 전제로 미루어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초범의 경우가 전체의 약 42%(86명)를 차지하고 있어 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4범 이상이 20.5%(42명), 3범이 19.0%(39명), 2범이 18.5%(38명)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초범의 경우 아마추어 절도범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때문에 쉽게 검거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 또한 4범 이상의 동종범죄경력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가 높은 것은 전문절도범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결과는 침입절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설문 응답결과라고 할 수 있다.

② 범행 시 음주여부

범행 시 음주여부는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요인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범행 시 음주여부에 대한 설문은 음주를 통해 범행 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전혀 음주를 하지 않은 경우와 음주의 양이 적어 범행당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음주의 양이 많아 범행 당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설문하였다. 그 결과 범행 시 음주여부에서 전혀 마시지 않은 범죄자가 49.8%(103명), 약간 마신 범죄자가 26.6%(55명)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76% 이상이 음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침입절도 범행 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을 확률을 줄이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③ 범행 시 약물복용

범행 시 약물복용여부에 관한 설문에서 약 94%의 응답자는 약물복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의 약물은 마약 등의 개념으로 단순한 약물은 범행당시 합리적 선택을 하는데, 별다른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다. 범행 당시 약물복용의 결과는 음주여부와 비슷한 결과로 범행 시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추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④ 범행 시 공범여부

범행 시 공범이 있었다는 것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면서 범행을 모의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침입절도범의 범행 패턴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응답자

207명 가운데, 단독범행이 153명으로 전체의 73.9%, 공범이 있는 경우가 54명으로 26.1%를 차지하고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공범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저질렀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분석 할 수 있다.

<표 11> 침입절도범의 범죄 관련 특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동종 범죄 경력	초범	86	42.0	음주 여부	안 마심	103	49.8
	2범	38	18.5		약간 마심	55	26.6
	3범	39	19.0		많이 마심	49	23.7
	4범이상	42	20.5				
합 계		205	100.0	합 계		207	100.0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약물 복용 여부	아니다	195	93.8	공범 여부	단독범행	153	73.9
	그렇다	13	6.3		공범	54	26.1
	합 계	208	100.0		합 계		207

IV. 민간경비 활용방안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침입절도의 특성을 중심으로 이를 사전에 통제하고 궁극적으로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침입절도의 경우 사전적 예방이 중요하므로 공경비를 포함하여 민간경비에서의 활용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1. 범죄의 기대이익 감소

이 연구에서 살펴보면 침입절도범들의 주요 고려 변수가 ‘표적의 매력성’이라고 할 있는 ‘수익성’과 ‘처분의 용이성’이었다. 이러한 범행대상의 재화는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를 사전에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범죄자에게 범죄를 행함으로써 기대되는 이익을 감소시키는 방법에는, 절도의 경우 흔히 물건에 표시를 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이는 범죄예방차원을 넘어서 수사 및 검거문 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재화나 물품에 대하여 재물 등록이 되어 있음을 홍보하는 것이 실제 표시를 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 일 수 있다. 보상을 감소시키려는 방법에는 ‘목표 제거’, ‘재물 등록’, ‘유인요인 제거’, ‘규칙 제정’ 등이 이에 해당된다. ‘목표 제거’의 방법에는

가정이나 가게에 현금을 놔두지 않는 등의 범죄 목표가 될 만한 대상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재물 등록'은 범행의 목표가 될 만한 목표물에 표식을 남기거나 등록을 하여 범죄대상물의 처분을 곤란하게 하고 처분 이후에도 쉽게 추적될 수 있음을 잠재적 범죄자에게 인식시키려는 방법이다(임창주, 2006: 76). 이를 위해 민간업체에 중요한 재물을 등록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2. 범죄자의 검거위험 증대

침입 절도범들은 범행 시 '수익성' 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범행전후 주변에서 순찰차량을 목격하거나, 경찰의 순찰 빈도 등 위협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감시의 형태를 늘려 범죄자로 하여금 검거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범행을 포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자의 검거위험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물리적 환경에 대한 기술적 감시, 공식적/비공식적 감시, 자연적 감시 등을 들 수 있다(Pease, 1991: 72). 먼저 기술적 감시방법으로는 주거지역, 상가지역, 교통시설 및 건물에 다양한 종류의 감시 장치들을 설치하여 특정지역에의 접근을 통제하거나 감시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CCTV 설치를 들 수 있다. 공식적/비공식적 감시는 경찰 등을 비롯한 민간경비 업체를 통해 계속적으로 검거의 위험을 제공함으로써 잠재적 범죄자를 억제하는 활동을 펼쳐나가는 것이다.

또한 이웃감시활동, 가로조명의 개선, 방어 공간 등의 방법 등을 통해 자연적 감시도 병행되어 진다면 궁극적으로 침입절도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된다(정무용·김선필, 1992: 538).

3. 범죄 기회의 최소화 방안

이 연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침입·도주가 용이한 지역'은 침입절도범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먼저 범죄자의 범죄 실행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을 간구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방법에는 범행대상의 강화, 접근통제 등을 들 수 있는데, 범행대상의 강화는 범죄기회를 감소시키기 위해 시건장치나 경보장치들을 사용함으로써 범죄목표물의 물리적 안전성을 증대시키려는 방법이고, 접근통제는 문을 잠그고 울타리를 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접근을 통제하거나 범죄기회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수단을 제거함으로써 예방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범행대상의 강화와 접근통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 스스로의 노력이지만, 경비시설업체의 통제와 관리가 병행될 수 없다면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없는 영역이므로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어 진다.

VI. 결 론

이 연구는 침입절도 특성에 따른 민간경비 활용방안으로 공식통계를 통한 일반적인 특성과, 침입절도로 수감중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범죄 상황에 대한 자료를 통해 효과적인 통제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민간경비의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전국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10곳에 수용되어있는 침입절도범 208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는데, 범죄 상황에 대한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침입절도범의 약 24%만이 합리적 선택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범행당시 체포의 두려움은 약 60.7%가 가지고 있었으나, 범행에 대한 자신감도 69.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침입절도의 시간은 밤 시간대에 주로 실행되었고, 휴가철인 여름철에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서 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범행대상 지역은 도시의 주거지역, 범행시 침입 장소는 개인주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범죄자의 범행대상 선택 시 고려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수익성'이 가장 크게 고려되고 있었고, 다음으로 '감시성', '위험성' 등의 요인이 범죄자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었다. 동종범죄의 경력은 초범인 경우가 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범행시 음주나 약물사용 여부는 커다란 동기요소로 작용하지 않고 있었다. 범행시의 공범여부는 응답자의 73.9%가 단독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한 민간경비 활용방안은, 침입절도범의 보상을 감소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업체를 활용하여 재물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자의 검거위험을 증대 시킬 수 있도록 경찰을 비롯한 공식적인 감시와 민간경비업체와 일반인들을 활용한 비공식적 감시의 강화 그리고 범죄자의 범죄 실행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범행대상의 강화와, 접근통제를 제시 하였다.

이 연구는 침입절도범의 특성을 현재 복역 중인 재소자를 통해 파악하여 양적인 자료로 접근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으나, 개인 연구의 한계로 일반화를 시킬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고, 그러한 연구결과가 제시된다면 좀 더 발전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곽대경(2001), “침입절도범죄의 특성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15: 69-98.
- 경찰청(2008), 「경찰백서」.
- 김상균(2005), “침입절도범의 Geographic Profiling에 관한 연구: 범행이동거리의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 71-104.
- 노성호(1996), 「상점절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대검찰청(2000-2009), 「범죄분석」.
- 민수홍(2003),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치안논총」, 치안연구소.
- 박병식(1997), “침입범죄와 주거안전: Security 교육 시론”, 『한국안전교육학회지』, 1(1): 105-117. 한국안전교육학회.
- 박순진(2002), “1990년대 강도 및 절도범죄의 변화추세: 공시통계와 범죄피해조사 결과의 비교”, 『피해자학연구』, 11(1): 107-127.
- 박현호(2008), “범죄인의 범죄대상 선택에 관한 연구: 침입절도범 분석을 중심으로” 『산업경영논총』, 15: 35-55.
- 법무연수원(2007-2008), 「범죄백서」.
- 심영희·김성언·류철원(1994), 「강·절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성식(1996), 「범죄의 상황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윤호(2008), 「범죄학」, 박영사.
- 이민식·김상원·박정선·신동준·윤옥경·이성식·황성현(2008), 「범죄학: 이론과 유형」, 센케이저리닝코리아.
- 임창주(2006),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정무용·김선필(1992), “환경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기초적 연구”, 단국대 논문집.
- 조병인(2001), 「현대사회와 범죄」, 법문사.
- 최응렬(1995),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주거침입절도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_____ (1997), “주거침입절도 방지를 위한 방법대책에 관한 연구: CPTED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8(3): 91-133.
- 황선영(2001), 「GIS를 활용한 범죄의 공간패턴 분석: 주거침입절도를 사례로」,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황지태(2004), 「강·절도범의 범행대상 선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국외문헌

- Bennett, T. & R. Wright, Burglars on Burglary, England(1984) Gower Publishing co.

- Cohen, L. E., and Cantor, D. (1981). Residential burglary in the United States: Life-style and demographic factors associated with the probability of victimization. *J Res. Crime Delinq.* 18: 113 - 127.
- Hope, T. (1984). Building design and burglary. In Clarke, R. V. G., and Hope, T. (eds.), *Coping with Burglary*, Kluwer-Nijhoff, Boston, Mass.
- Mayhew, P. (1987). *Residential Burglary: A Comparison of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England and Wales*,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Washington, D.C. (in press).
- U.S. Department of Justic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Dictionary of Criminal Justice Data Terminology*, (2nd ed.),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Walsh, D. (1986). *Heavy Business: Commercial Burglary and Robbery*, Routledge and Kegan Paul, London.

Abstract

A Research Survey on the Characteristics of Burglaries: Focused on How to Utilize Private Security

Kim, Dae-Kwon

A larceny means stealing others' properties, as one of crime types most closely connected with common people. Along with fraud, it is the mostly common property crime; in particular, the largest number of people are exposed to a burglary.

This study aims to find the schemes to utilize private guard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burglary. To do so,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into an actual condition of official statistics of burglary and into the criminals of burglary, with a view to understanding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burglary and suggesting defense mechanisms to prevent the crime. Burglary is not just a major crime to be dealt with by public guards like the police but also one to be handled increasingly more by private guards. It is why this study intends to identify how to utilize private guards in preventing the crime.

Investigations were made into 208 burglars, who were inmates of 10 correctional institutions (prisons or detention houses) across the country.

It is found that only about 24% of burglars committed the crime through rational choice, about 60.7% were feared of their arrest at the time of their crime, and a very high percentage (69.9%) of them were assured of their successful crime.

Burglaries usually happened at night, mostly in a summer day when everybody goes away from home for vacation. Primarily, the crimes took place in a private house of urban residential quarters.

What burglars considered mostly for target selection includes 'profitability,' followed by 'surveillance' and 'risk.' Most (42%) of them committed the crime for the first time ever. Generally, they were not inclined to commit the crime whi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r drug, which might prevent them from making reasonable decisions. 73.9% of the criminals said that they committed the crime singly without any accomplices.

Key Word : Burglary, Private Security, Rational Choice, Correctional Institution, Target Selection